

삼산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고 성 군
(기획감사실)

삼산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18. 7. 11.(수) ~ 7. 13.(금), 3일간
- 감사대상: 삼산면
- 감사인원: 기획감사실장 외 5명(재무과 1명 포함)
- 감사범위: 2016. 7. ~ 2018. 7. 감사일 현재까지 면정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과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실태
 - 각종 세수 부과·징수 실태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농지관리 등 산업경제행정 전반
 - 기타 복무실태 등

II. 감사성과

- 행정상·재정상 조치

구분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 원)				
	계	시정	주의	현지 조치	계	회수	추징	감액	
처분 요구	15	3	8	4	건수	2	2		
					금액	1,238,400	1,238,400		

- 신분상 조치 : 주의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일련 번호	건 명	요 구 내 용			비 고
		행정상	재정상		
			구분	금액(원)	
1	공사계약 집행업무 소홀	주의			
2	세출예산 집행업무 소홀	주의			
3	상촌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4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요구르트 구입 대금 გადა지급	시정	회수	62,400	
5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요구 미이행	주의			
6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3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후 정산업무 소홀	시정	회수	1,176,000	
7	용호지구 농로정비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정산 부적정	주의			
8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주의			
9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2건의 예정가격 작성 업무 부적절	주의			
10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 부적정	주의			
11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주의			
12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현지 조치			
13	농지원부 정비 소홀	현지 조치			
14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반납 안내 소홀	현지 조치			
15	재택 당직근무 관리소홀	현지 조치			
합 계		계	15	계	1,238,400
		시정	3	회수	1,238,400
		주의	8	추징	
		현지조치	4	기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면	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공사계약 집행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사업명	사업내역	계약금액 (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선공사)
\$\$면장애인지 출입로 및 차 량비가림 시 설공사	- 차량 비가림 시설공사 1식 - 장애인 진출입로 난간설치 2개소 - 미끄럼방지 166㎡ - 카스토퍼 설치 12개	18,000	++++(주) ooo	2018.3.2. ~ 3.29.	- 장애인표시 도색 - 차량 비가림 시설내 도색
\$\$면 사무소 청사유지보수 공사	- 수목이설 및 식재 - 차선도색 - 장애인 난간 설치	1,800	++++(주) ooo	2018.4.10. ~ 5.7.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 시행)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9번째,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재정법 제71조)를 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10번째, 예산집행절차 준수를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면에서는
 - 2018. 3월 금18,000천원으로 '\$\$면장애인 진출입로 및 차량비가림 시설공사'를 하면서 미끄럼방지포장 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사라지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선공사 하였으며
 - 또한, 차량비가림 시설공사 후 차량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카스토퍼 설치 위치에 맞추어 차선도색을 선시공하였다.
 - 위와 같이 선시공한 공사 물량에 대하여 2018.4.10. 금1,800천원으로 '\$\$면사무소 청사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8.5.11.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계약 집행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2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세출예산 집행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22.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 원칙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22. 시행)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면에서는
 - 2018.3.21. 판곡지구 가각부정비사업(공사)을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소인을 누락하였고
 - 2018.3.30. 판곡지구 가각부정비사업 물품구입(레미콘)을 위해 계약상대자(OOOOO)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 납품기한, 계약보증

금 납품서 및 지급각서의 계약이행기간 등을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8.5.24. 대포마을 한해대비 정비사업 계약보증금 납부서(지급각서)에 계약일, 계약이행기간 및 보증기간을 누락하였음.
- 또한, 2018.4.7. 판곡지구 잔여가각부정비사업 관급자재(레미콘)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일자가 누락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3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6 ~ 2017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상촌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 위법·부당 내용

【상촌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변경 현황】

구분	사 업 개 요	사 업 비(천원)			공사기간
		계	도금액	관금액	
당초	■ 고성군 \$\$면 삼봉리 433-3번지 일원 ○ 수로관설치(600C) L=158.0m ○ 수로관설치(800B) L=6.0m ○ 흠관설치(D700) L=20.0m ○ 흠관설치(D600) L=42.5m ○ 콘크리트포장 A=75.5㎡	26,304	18,500	7,804	2017.03.10. ~ 2017.04.06.
변경	■ 고성군 \$\$면 삼봉리 566-1번지 일원 ○ 수로관설치(600C) L=120.0m ○ 수로관설치(1000C) L=62.0m ○ 콘크리트포장 A=56.0㎡	26,191	14,288	11,903	2017.3.10. ~ 2017.11.15.
증·감	○ 수로관설치(1000C) L=62.0m(증) ○ 수로관설치(600C) L=38.0m(감) ○ 수로관설치(800C) L=6.0m(감) ○ 흠관설치(Φ700) L=20.0m(감) ○ 흠관설치(Φ600) L=42.5m(감) ○ 사각맨홀 4개소(감) ○ 콘크리트포장 A=19.5㎡(감)	감113	감4,212	증4,099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시행 2017.2.1.)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 4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

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시행 2017.2.1.)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tt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2017.3.10. 사업비 26,304천원으로 발주한 후 40%의 공정률을 보이던 중 사업부지 토지사용 미동의를 따라 잔여공정 추진이 불가능하여 2017.3.31.공사를 중지하였으며

○ 2017. 11월초 ss마을 이장 ooo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 사업이 어려울 경우 해당공사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설계변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4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7	시정	회수	62,400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요구르트 구입대금 과다지급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구분	배부내역		구입대금 지급현황		차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940	376,000	1,096	438,400	156	62,400	
2017. 9.	400	160,000	448	179,200	48	19,200	단가 400원
2017.12.	540	216,000	648	259,200	108	43,200	단가 4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 시행)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9번째,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재정법 제71조)를 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2.27. 시행)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신용카드 사용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또한, 2017.3.13. 계약상대자(ㄱㄱㄱㄱㄱㄱ\$\$지점장)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음료(요구르트)구입 단가계약 5. 대금의 지급은 당월 공급량에 대한 대가를 “을”의 청구에 의거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라고 명시하여 놓았음에도

- \$\$면에서는 2017년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시 단가계약의 계약사항에 따라 “을(ㄱㄱㄱㄱㄱㄱ\$\$지점장)”의 청구에 따라 카드결재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현황과 같이 요구르트 지원대상자 수급확인부의 배부내역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2017.9월과 12월에 각각 48개, 108개 등 총 156개 금 62,40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수급확인부의 배부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과다지급 된 금62,4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고 (회수)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5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	성 명	ㄹㄹㄹ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8	시정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요구 미이행

1. 위법·부당내용

【내 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결손처분)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재무과-6426(2017.2.27.)호로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조치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요청토록 지시하였음에도
- \$\$면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 실태 점검결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박○○ 등 5명에 대하여 박○○(체납액 485천원)에게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체납액 896천원)에게는 독촉장 발송도 하지 않았으며, 손○○ 등 3명(체납액 4,035천원)은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후 관리하여야 하나 무재산 및 환가가치도 없는 재산 압류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지방세 체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후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6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8	시정	회수	1,176,000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3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면두 포리	○ 아스콘 덧씌우기 A=34.52a ○ 배수관설치 1식	26,219	18,170	8,049	2018.3.9. ~ 2018.3.27.	(주)LLLLL 대표 BBBB
두모마을 도로정비공사	\$\$면두 포리	○ 아스콘 덧씌우기 A=6.82a ○ 전석쌓기 A=263.9㎡	40,616	33,780	6,836	2018.4.6. ~ 2018.5.1.	(주)LLLLL 대표 BBBB
판곡지구 가각부 정비사업	\$\$면 판곡리	○ 석축공 -찰쌓기 A=232.1㎡	33,592	29,602	3,990	2018.3.26. ~ 2018.4.20.	TTTTT(주) 대표 OOO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55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의 집행이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면에서는 2018.3.7. (주)LLLL 대표 BBBB와 18,17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이하 “①”이라 한다), 2018.4.2. (주)LLLL 대표 BBBB와 33,78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두모마을 도로정비공사」(이하 “②”라 한다), 2018.3.21. KKKK(주) 대표 OOO과 29,602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판곡지구 가각부 정비사업」(이하 “③”이라 한다)의 경우,
 - 시공사에서 계약체결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①의 경우 333천원, ②의 경우 608천원, ③의 경우 603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에 따라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준공 전 확인하여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비이므로 도급자가 제출한 집행실적(①의 경우: 370천원, ②의 경우: 670천원, ③의 경우: 610천원)중 차량통제 목적의 안전간판 구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이므로 도급자의 적정한 집행 실적 금액은 ①의 경우 170천원, ②의 경우 270천원, ③의 경우 210천원 이므로 그 차액만큼 정산하여야 하나, \$\$면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6천원(①의 경우 : 212천원, ②의

경우 : 437천원, ③의 경우 : 527천원, 제경비 포함금액)의 예산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초과 지급한 사업비 1,176,000원을 회수조치 하고 (회수)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7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용호지구 농로정비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정산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금액	관금액		
용호지구 농로정비사업	\$\$면미 룡리	○ 농로포장 A=456㎡ ○ 담진입로 11개소	17,808	11,918	5,890	2018.3.14. ~ 2018.4.6	(주)ㅋㅋㅋㅋ 대표 ㅁㅁㅁ

【내 용】

- 설계서는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설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시공과정이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

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22. 시행)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설계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 2018.3.13. (주)ㅋㅋㅋㅋ 대표 ㅋㅋ와 12,534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용호지구 농로 정비사업」의 경우,

- 공사감독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의 레미콘 타설전, 보조기층 상부에 분리막(비닐)을 포설하도록 단가산출서에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공사감독자가 감독업무 수행중 전체 포장면적 574㎡중 364㎡를 시공자가 분리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을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2018.4.6.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준공검사원은 분리막 설치 공사비 616천원을 감액하여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 설계서가 누락, 오류, 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는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가산출서에만 반영된 분리막 설치 공종의 시행 여부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면에서 시공자가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비 616천원을 부적정하게 감액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8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7~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금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 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7	병산도로 재포장공사	15,300	(주)포포포포포 ㅎㅎㅎ	---	2017.3.6.~ 2017.4.12.	
2017	갈망개 진입도로 정비공사	14,078	(주)포포포포포 ㅎㅎㅎ	---	2017.3.7.~ 2017.4.12.	
2017	군령포마을 안길정비공사	10,630	(주)LLLLL BBBBB	BBBBB	2017.3.10.~ 3017.4.18.	
2017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12,945	(주)LLLLL BBBBB	BBBBB	2017.3.10.~ 2017.3.31.	
2017	tt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18,220	(주)zzzzz 333	111	2017.10.20.~ 2017.12.18.	
2017	두포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19,600	(주)zzzzz 333	111	2017.11.13.~ 2017.12.7.	
2017	장지소류지 준설공사	13,500	(주)ttt 222	222	2017.11.1.~ 2017.11.24.	
2017	병산소류지 준설사업	26,448	(주)ttt 222	222	2017.11.21.~ 2017.12.12.	
2018	판곡지구 가각부 정비공사	29,600	(주)ggggg ooo	ooo	2018.3.21.~ 2018.4.18.	
2018	판곡지구 잔여가각부 정비공사	10,800	(주)ggggg ooo	ooo	2018.4.5.~ 2018.4.18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면에서는 ‘병산도로 재포장공사’ 등 10개 현장에 계약업체의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건설기술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합여부, 선임한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된 사업장여부, 중복배치가 가능한 건설공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동일한 공사기간 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소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경우 배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어야 함에도 중복배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9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7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2건의 예정가격 작성업무 부적절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면두 포리	○ 아스콘 덧씌우기 A=34.52a ○ 배수관설치 1식	26,219	18,170	8,049	2018.3.9. ~ 2018.3.27.	(주)LLLLL 대표 BBBB
두모마을 도로정비공사	\$\$면두 포리	○ 아스콘 덧씌우기 A=6.82a ○ 전석쌓기 A=263.9㎡	40,616	33,780	6,836	2018.4.6. ~ 2018.5.1.	(주)LLLLL 대표 BBBB
판곡지구 가각부 정비사업	\$\$면 판곡리	○ 석축공 -찰쌓기 A=232.1㎡	33,592	29,602	3,990	2018.3.26. ~ 2018.4.20.	KKKK(주) 대표 OOO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55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의 집행이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면에서는 2018.3.7. (주)LLLL 대표 BBBB와 18,17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이하 “①”이라 한다), 2018.4.2. (주)LLLL 대표 BBBB와 33,78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두모마을 도로정비공사」(이하 “②”라 한다), 2018.3.21. KKKK(주) 대표 OOO와 29,602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판곡지구 가각부 정비사업」(이하 “③”이라 한다)의 경우,

- 시공사에서 계약체결후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①의 경우 333천원, ②의 경우 608천원, ③의 경우 603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에 따라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준공 전 확인하여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비이므로 도급자가 제출한 집행실적(①의 경우: 370천원, ②의 경우: 670천원, ③의 경우: 610천원)중 차량통제 목적의 안전간판 구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이므로 도급자의 적정한 집행 실적 금액은 ①의 경우 170천원, ②의 경우 270천원, ③의 경우 210천원

이므로 그 차액만큼 정산하여야 하나, \$\$면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6천원(①의 경우 : 212천원, ②의 경우 : 437천원, ③의 경우 : 527천원, 제경비 포함금액)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0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	성 명	ㄹㄹㄹ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6~2018	주의	-	-	문책자조서 참조

제 목 :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내 용】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6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수입 23건 257,700원을 1일~6일까지 지연 납부하는 등 인증기용증지 수입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1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면	2016~2018	주의	조치방법	금액(원)	문책자조서 참조
			-	-	
제 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1. 위법·부당내용					
<p>○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및 「고성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에 따라 군세징수 및 도세징수사무가 읍면장의 권한위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p> <p>○ 관련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과-3957(2016.2.15.)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계획 통보 - 재무과-6426(2017.2.27.)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통보 - 재무과-37138(2017.11.6.)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 재무과-6499(2018.3.6.)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통보 <p>○ 수감일 현재 \$\$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자 471명 1,018건 121,079,820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개인균등 주민세 등 1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57명 63건 380,35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감대상기간인 2016.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세 납부독려 및 전산관리 실적이 181건(일일 평균 0.25건)에 그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2. 처분요구					
<p>▶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주의)</p>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2	감사담당자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	
소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6~2018	현지 조치	-	-	-

제 목 :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황】

관 리 읍면동	사무명	사업연도	단계	사업기간	참가인원	위반사항	비고
\$\$면	공공근로사업	2016년	2단계	2016.7.4. ~ 12.9	555 등 2인	사업장 지도감독 의무 소홀	세부내역 별첨
		2017년	1단계	2017.1.16. ~ 6.30	777 등 2인		
			2단계	2017.7.3. ~ 12.15	888 등 2인		
		2018년	1단계	2018.1.15. ~ 6.29	999 등 4명		

【위법·부당내용】

○ 「2016년 공공근로사업지침」 제10장 1.사업장관리에 따르면,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행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일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고 점검 관리하는

서류(작업일지)를 2016.7.4.~2016.8.11.까지는 작성하였으나, 2016.8.1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공근로사업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3	감사담당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8	현지 조치	-	-	-

제 목 : 농지원부 정비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총정비대상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사망말소자	한세대 중복 농지원부	중복등재 농가주, 농가구성원	경작미달자
291	201	72	5	2	2	9

【위법 · 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1항에 따르면, 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면에서는 상기 총 정비대상 291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업무

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4	감사담당자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
소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6~2018	현지 조치	-	-	-

제 목 :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납안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내 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회수) 받아 폐기하여야 하며
-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 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 반환되도록 하고 반환 통보 안내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면에서는 2016. 7.~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등록 말소(사망자 포함)자 *** 등 15명 중 15명 모두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등록증 반환이 8명에 거치는 등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5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면	2016~2018	현지 조치	-	-	-

제 목 : 재택 당직근무 관리소홀

1. 위법·부당내용

【당직근무 위반 내역】

직 급	성명	위반회수	비고
행정 6	111	6	
행정 6	222	4	
세무 6	333	2	
세무 6	444	1	
해양수산 6	555	2	
행정 7	666	1	
행정 7	777	5	
행정 7	888	1	
시설 7	999	2	
사회복지 8	ㄱㄱㄱ	2	
행정 9	ㄴㄴㄴ	2	
행정 9	ㄷㄷㄷ	1	
합 계		29	

【내 용】

-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6항에 의하면 재택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를 강구하고, 재택근무

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10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면에서는 2016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함에 있어 재택당직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정위치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 퇴근함에도 재택당직공무원의 복무를 지도·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